

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개정이유

- 각종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있어, 단순 회의참석 외 전문지식을 갖고 사전 안건을 검토해야 하는 설계자문위원회등에 대한 수당의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위원들의 보다 충실한 시정자문 및 안건 심의를 도모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현행 위원회 성격에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회의참석수당(1회당 5만원, 3시간 초과시 2만원 추가지급)만을 지급하던 것을 위원장의 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건심의를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3조제2항)

□ 검토의견

- 시정의 주요정책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심의 기능을 수행함에 전문지식을 갖고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는데 있어 안건 심의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, 동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는바 내용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

제3조(일비등) ②도소속 직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,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심의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